

서울특별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

(송명화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614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08월 11일

발 의 자 : 송명화, 김기대, 김기덕,
김정환, 김제리, 김종무,
김평남, 박기열,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서윤기,
양민규, 유정희, 이광성,
이영실, 장상기, 홍성룡,
황규복 의원(19명)

1. 제안이유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 변화에 필요한 교육시스템의 구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기여함
-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드론 등 기술 융합의 경제·사회구조 혁신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학교의 교육과정 및 교육환경 등의 변화에 대비함

2. 주요내용

- 가. 4차 산업혁명 교육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나.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다.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라.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담당 교사 등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연수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타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 변화에 필요한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교육정책의 추진체계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드론 등 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전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경제·사회구조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2. “4차 산업혁명 교육”이란 4차 산업혁명 융합 기반 기술을 학교의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평가 및 교육환경에 적용함으로써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을 말한다.
3. “학교”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효과적인 4차 산업혁명 교육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창의적인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4차 산업혁명 교육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4차 산업혁명 교육의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방안
3. 4차 산업혁명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4. 4차 산업혁명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 방안
5. 4차 산업혁명 교육 담당 교원 등의 연수
6.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교육 지원에 관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사물인터넷 기반 인재양성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기능이 유사한 자문위원회의가 있을 경우 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4차 산업혁명 교육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4차 산업혁명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협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조례에 따른 지원센터와 그 기능이 유사한 센터나 교육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센터 또는 교육기관이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4차 산업혁명 교육 관련 수업지원에 관한 사항
2. 4차 산업혁명 교육 관련 교육내용의 개발과 보급
3. 4차 산업혁명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컨설팅 및 정보의 제공
4. 4차 산업혁명 교육 관련 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5. 4차 산업혁명 교육 인지도 제고와 저변확대를 위한 홍보·교육
6. 4차 산업혁명 교육 관련 학교현장 지원
7.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교육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교원 대상 연수 지원 등) ①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담당 교원 등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연수 등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원이 4차 산업혁명 교육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민 대상 교육 지원)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에 관심이 있는 학교 밖 청소년 등 시민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 대학,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서번호

2021080500000006

미첨부 사유서 (1호)

요청인 : 송명화 의원

담당 : 조도형 과장
이정수 팀장
채소영 주무관

접수일 : 2021.08.05

회신일 : 2021.08.11

내용문의 : 02-2180-7942

서울특별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3. 미첨부 사유
4.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Seoul Metropolitan Council

○ 4차 산업혁명 교육 자문위원회 운영 비용 ≙ 24,000천원

- 산출방식 $\sum_{i=1}^5$ (연간 4차 산업혁명 교육 자문위원회 운영비용)_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 연간 4차 산업혁명 교육 자문위원회 운영 비용

= 연간 위원회 참석수당 + 연간 위원회 업무추진 경비

= 3,900천원 + 900천원

= 4,800천원

· 연간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 구성원 수 × 1인당 회의참석 수당 × 1년간 회의개최 횟수
= 13명 × 150,000원 × 2회
= 3,900천원

※ 참석수당 지급기준은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기본료 10만원, 2시간 초과 비용 5만원 등 총15만원 기준

· 연간 위원회 업무추진 경비 = 전체 위원 수 × 1인당 업무추진비 단가 × 1년간 회의개최 횟수
= 15명 × 30,000원 × 2회
= 900천원

※ 1인당 업무추진경비 단가는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3만원으로 가정

○ 4차 산업혁명 교육 지원센터 운영 비용 ≙ 1,915,200천원

- 산출방식 $\sum_{i=1}^5$ (연간 4차 산업혁명 교육 지원센터 설치·운영비용)_i

※ i = 비용추계 연차(2021~2025)

- 연간 4차 산업혁명 교육 지원센터 설치·운영 비용 ≙ 383,040천원

· 서울시교육청 교육혁신과에서 과학교사 연수, 다양한 과학교육 체험활동 장려, 과학행사 지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과학교육센터의 2021년 과학교육센터운영 사업 예산 383,040천원을 준용하여 비용을 산출함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당관 조도형

예산분석팀장 이정수

주무관 채소영

☎ 02-2180-7942

e-mail : liz1998@seoul.go.kr

【참고】 서울시교육청 기 추진사업

조례안 규정	2021 예산 (단위:천원)	비 고
제8조 (교원 대상 연수 지원 등)	383,040	▶ 사업명 : 과학교육센터 운영 • 사업내용 : 학생교육프로그램 운영, 과학교사 연수, STEAM 및 메이커 직무연수, 영재 담당자 워크숍 및 컨설팅 지원
	545,000	▶ 사업명 : AI국가전략 정책연수 • 사업내용 : 교육대학원 AI융합교육 전공 등록금 일부지원 및 AI관련 연수 운영
	500,000	▶ 사업명 : 4차 산업혁명 신기술 중장기 연수 • 사업내용 : 4차 산업혁명 대비 직업계고 교원 신기술 중장기 연수비 지원

자료 : 2021년 서울특별시 교육청 예산안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참고하여 재구성